

埠頭管理協會는 指定保稅區域 管理人으로서 指定保稅區域內에 搬出
入되는 모든 貨物에 對하여 善意의

管理者義務를 갖고 있으나 一部管理
人の 경우에 管理하고 있는 地域內
에 貨物이 搬出入되고 있는 物動量

도 正確히 把握할 수 있는 制度가
自體內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狀況에서 同保險付保業務에 正

安保的 次元에서 본 우리 職場과 나의 使命

金化基
(光州支部·次長)

지난 6月 本協會의 業務能率提高를 위해 懸賞募集된 論文中
營理部分에서 당선된 작품하나를 여기 소개한다.

“鐵의帳幕” 또는 “竹의帳幕”하면 世界 第二次大戰以後 東西로 分離對峙되였던 思想의 또는 理念의 冷戰體制의 代表의인 말로써 蘇聯과 中共을 指稱하였던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思想 또는 理念的概念은 30年前에 많은 變遷을 가져왔다. 民主와 共產의 冷戰體制에서 富國과 貧國을 갈라놓는 南과 北의 體制로 차츰 變遷되어 간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國際的 變遷속에서 우리나라의 立地的 與件과 周邊 情勢의 變化는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는가. 北韓 中共 蘇聯과는 休戰이란 防柵으로 戰爭 前夜의 고요함과 같이 一觸即發의 休戰線을 가지고 있으며, 日本과는 어제까지만 하여도 東西冷戰의 友邦으로서 存立하였으나 지금은 차츰 南北體制의 對峙方向에서相互經濟戰爭에 突入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點에서 考察하였을 때 日本의 親韓的 人物이었던 福田首相이 왜 獨島의 領有權을 터무니 없이 主張하고 나선 背景과 底意를 다음과 같이 쉽게 풀이할 수 있다고 본다.

(1) 漁撈專管水域 200해리 宣布에 따른 利害關係
(2) 北方四島嶼(蘇聯) “센가구” 列島(中共) 獨島(韓國) 등을 一括處理하는 方向에서 經濟的 利益을追求
하자는 底意.

(3) 地形의으로 獨島地域이 海底山岳이 隆起露出되어 새로운 群島形成의 可能性이 있다는 地理의in 條

件。

以上과 같은 여러가지 經濟的 理由로 獨島가 韓國領이 明確함에도 不拘하고 어제의 盟邦인 日本이 相互間의 信義도 헌신과 같이 저바리고 나선 經濟的 行動이야 말로 南北體制의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며 世界各國이 經濟的 利害關係 앞에는 무엇이든 牺牲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銘心하여야 할 것인가.

過去와 같이 一旦有事時에는 盟邦이 支援하고 友邦國이 援助하여 주겠지 하는 思考方式은 東西冷戰體制下에서는 볼 수 있었던 하나의 遺物이 되었으며 오늘날의 變遷된 南北體制下에서는 有備無患의 길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冷嚴한 現實을 直視 할줄 알아야 되겠다.

1. 自主國防 2. 自立經濟

우리의 存立을 우리들 스스로가 守護하고 國家가 繁榮하기 为해서는 以上的 두가지 말以外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도 其間의 꾀 땀에 努力으로 經濟의 次元에서 世界的으로 中進國에 突入하였다고 生覺한다. 外貨保有高도 35억 \$ 輸出實績도 今年에는 100億 \$이突破될 展望 國際收支黑字도 눈앞의 出發이라고 보았을 때 바로 이것이 國力이구나 하고 實感하게 된다.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요 자랑이다. 모처럼의 좋은 이 機會를 汎國民의으로 團結하여 밀고 나아가야겠다. 外貨保有額의 增加 重工業 產業力의 急速한伸張 人力輸出로 因한 外貨 稼得等 內資膨脹 要因으로 因한 “인푸레”誘發의 可能性을 우리가 이 時點에서 잘 살기 为해서는

1. 儉素한 消費姿勢
2. 節約하는 生活氣風
3. 賦蓄하는 國民像을 振作시켜

國民 각者가 內資動員의 役軍이 되어 “인푸레”를 防止하고 國民生活의 安定을 期함은勿論 國際收支 競爭力의 弱化를 最善을 다하여 防止함과 아울러 國力

確性을 기한다는 것은 더욱이 어려운 實情에 있음은 言及할 必要가 없다.

即, 同指定保稅區域 管理人이 同地域內에 搬入되는 모든 貨物에 대하여 貨物이 어느 場所에 얼마만한

量의 貨物이 있는지도 把握할수 있는 狀態일 뿐 아니라 어떤 貨物이 언제 通關되어 언제 搬出되고 있는

仲張에 總邁進하여야 되겠다.

77年度 우리 保險人의 內資調達額은 총잡아 1兆원 !
前述한바와 같이 우리 保險人은 內資動員의 役軍이
라는 使命感과 務持를 살려 期必코 이를 達成하여야
한다.

英國의 某著名人事는 “韓國의 繁榮은 4次 5個年 計劃의 達成與否에 있고 4次 5個年 計劃遂行의 成敗는 內資動員의 與否에서 決定된다”고 記述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가 考察할 問題는 內資의 重要性이 어떻
한 것인지 充分히 認識하게 되었고 舉收保險料와 內
資와는 絶對的인 函數關係가 成立된다는 事實도 알수
있게 되었다.

協會運營費와 密接한 關係가 있기 때문에 保險料의
舉收增大가 重要하다는 拙劣한 思考方式은 拂拭되어
야 하겠다. 巨視的인 觀察과 安保의 次元에서도 우리
職場은 國運을 兩肩에 걸친 內資動員의 役軍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서 舉收保險料의 極大化를 期할 것인가. 바로 本文의 焦點은 여기에 集約
된다.

“保險料 舉收增大方案”

協會業務의 性貨上 保險料 舉收方案은 金融部分과 特建部分으로 分類하게 된다. 金融部分은 우리의 創
意力이나 努力으로서는 舉收增大가 거의 不可能하
기 때문에 記述을 省略한다. 特殊建物의 舉收增大
는 우리의 創意力과 努力으로 어느 程度可能한 點
이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記述하여 본다.

1. 漏落된 新規對象物件를 徹底히 發掘한다.

(方案)

光州支部에서는 이미 施行하고 있는 事實인 바 光州
消防署와 두터운 協力體制를 維持 함으로써 概築建物
도 消防設備検査 同意要請書 또는 危險物 取扱許可關
係書類가 備置되어 있기 때문에 其中에서 特建對象物
만 拣萃通報을 받아 이미 點檢이나 契約業務가 安了
되었으며 新築建物도 竣工検査前에 消防設備 合格與
否의 同意를 求하기 때문에 對象物만 發見되며 即時
連絡을 받고 있으므로 對象物 漏落은 徹底히 防止되

고 있음.

특히 新規物件 發掘을 為한 職員의 動員도 없기 때
문에 能率向上에도 一助가 되고 있음.

2. 工場物件의 機械價額을 現實化시킨다.

(方案)

特建對象 工場物件은 거의 決算法人이기 때문에 決
算公告 貸借對照表上의 機械價額에서 減價償却充當金
만 控除하고 全額計上하여 財源으로 確保한다.

(1) 當該工場에서 決算公告를 行한 公告日字外 掲
載新聞名을 알아서 資料로 拣萃確保한다.

(2) 1項이 어려운 때는 管轄稅務署에 協助依頼公文
을 發送하고 稅務署에서 資料를 確保하도록 措置한다

3. 契約未盡한 아파트, 市場物件을 一掃한다.

本對象物은 個個人의 擔當職員만으로는 人力上 恒
常 未洽하다. 適當한 日時를 周期의 으로 選擇하여 全
職員을 動員組를 編成하여 3.4人の 1組를 物件別로
責任을 負荷 集中的으로 契約을 勸誘하여 未決을 一
掃하는 方案과 對策을 樹立하여야 한다.

4. 點檢과 契約業務의 効率的運營

2次點檢부터서는 契約部署의 提示資料(年中 契約者
別 滿期日表)에 依據 滿期日 1個月前 點檢을 實施함
으로서 同 結果에 依한 最近의 正確한 資料로서 契約
이 이후에 치도록 協助體制를 構築하여야 한다.

發展的 씨-비스 向上方案

1. 初期鎮火를 為해서 消火器 使用法을 點檢現場에
서 職員으로 하여금 直接 使用하여 示範을 보여 주고
(所有者는 購入 備置만 하였지 充藥代 關係로 實際使
用은 하여 보지 못하고 말로서만 說明을 들었을 뿐이
어서 實際有事時에는 당황하여 充분히 使用을 못하는
傾向) 同示範으로 因한 充藥은 協會에서 負擔하는 方
案.

2. 罷災金의 迅速하고 親切한 支給으로 協會像의 再
定立方案 研究. “끝”

西紀 1977年 6月 28日 作成

지도把握할 수 없는程度의狀況에서付保를誘導한다는것은不可能한것이당연하다고判断되어協約을解止하여同結果를關聯監督機關에通報함에따라監督機關이直接指定保稅管理運營細則을만드는等諸般措置를取하여補完한바도있다.

라. 運營 및 管理上의 消極性

① 設營主에 對한 監督 내지 統制機能 未治

② 付保業務指導의 統一性缺如等을 들수가있겠으나이는火協이各保稅倉庫設營主에對한監督上에있어서同保險의趣旨에立却하여科學的이고보다綿密한分析研究檢討할時間의 여유가 없음에도否定할수없으나特히特保1部내에1個課로서서울地域내에所在하고있는倉庫에대한營業에도急急한나머지制度運營내지監督上의研究가缺如된狀態에있는現實에비추어볼때이에對한研究가先行되어야할것으로思料된다.

5. 改善 方向

同保險制度를根本적으로研究檢討하게된것은76年釜山大火를契機로하여現在委·受任制度를檢討내지制度改善을하여이에따른問題點을改善하라는財務부의指示에依據 이를具體적으로檢討하게된것이다.

同改善方向이財務부로부터示達되기까지當協會와財務부關係者들과 아래와같은여러가지方法이檢討되었으나그중몇가지만을살펴보기로한다.

첫째, 現行制度를廢止하고原受會社가直接다른保險種目으로引

受하는 方法

둘째, 倉庫主賠償責任保險, 積荷保險 및 運送保險의 延長擔保等이臺頭되었으나同保險制度가

① 輸出入業者를不意의災害로부터保護를爲한政策保險의意義를喪失하게된다는點과

② 倉庫設營主賠償責任保險等은貨物이多樣하여적정保險價額을算定하여付保하기가困難한뿐아니라設營主의零細性으로一時에保險料負擔이過重하여

③ 付保漏落可能性이常存하여

④ 各保險會社의消極性내지保稅保險引受忌避傾向等이없지않다는點等여러가지問題點이擡頭되어同保險制度가輸出入貨物을不意의災難으로부터保護輸出增大를도모하려는政策의次元에서施行되고있는點을考慮廢止가어려운實情임에堪案法律에依하여強制付保토록하지않는限他種保險으로轉換하여도付保漏落 또는無保險貨物이繼續發生할것으로判斷되어結局現行制度를補完하게된것이다.

6. 改善 内容

앞에서言及한바와같이改善方向의設定基準에依하여現行制度改善內容을簡單히檢討하여보면

가. 現行委·受任制度를廢止하고倉庫設營主를保險契約者로하여火協과倉庫設營人間에協約締結即委任,受任關係에依한問題點을除去하기爲하여倉庫設營主가貨主를爲한保險契約者로하고貨主의委任與否를不問하고貨

主를爲하여保險契約을締結한것으로하고이를火協이承認한것題。

으로規定하므로保險者의立場을除去하고保險契約者的立場에두므로倉庫設營人の責任限界를明確히한點이며

나. 特約書의補完

① 藏置場의概念을保稅區域倉庫또는其他藏置場이라規定하고있는것을改正案은關稅法第65條에規定한指定保稅區域및特許保稅區域中營業用保稅倉庫,營業用保稅藏置場및保稅展示場斗同法第67條에依하여他所藏置場許可를받아保稅貨物을藏置하는建物또는場所로서그所在地,構造,級別名稱및圖面을別表藏置場明細表에記載하여協約締結된場所라고明確하게規定한點특히他所藏置場의경우火協의(案)에서는藏置場concept에서除外하게된main理由는

첫째, 이미言及된바와같이現在管轄稅關에서可能한他所藏置의許可를制限하고있으며,

둘째,各管轄稅關의監督上의問題即,一線稅關의人員不足에依하여he所藏置許可를할境遇에일일이確認할수가없을뿐아니라元來保稅區域을關稅法에依하여設定한主要한理由中의하나가保稅區域내에輸出入貨物을搬出入시키므로서稅關監督下에두기위한措置인만큼可能한保稅區域에搬入시키기爲한一環策으로도he所藏置를不許하고있으며그實例가釜山의境遇에13개의一般藏置場에對하여he所藏置許可를해주던것을76年11月부터는일체不許하고있으며施設을補完한4개는特許藏置場으로許可를해준것이그實例가있다.

둘째, he所藏置場許可의파악問

이는 他所藏置物 허가는 관세법에
의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화물에 대
하여同一場所內에서도 화물에 따
라 그때그때에隨時로 허가를 받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 볼 때 火協의
立場에서는 他所 허가된 화물을 파
악하여 契約을締結하여야 하는 어
려운 實情에 있으며,

셋째, 協約된 藏置場에 入庫時點
에서 付保토록 誘導가 不可能할뿐
만아니라 帳簿等에 備置가 되어 있
지 않으므로 付保作 내지 累落을
未然에 防止할 수 없는 實情에 있
으며,

넷째, 關稅法上 他所藏置 허가는
관세상 貨主내지 通關業者가申請
할수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貨主自身이
화물管理上 付保必要性을 느
껴直接 火協에 付保 要請할 수 있
으므로 이는 구태여 契約을締結할
必要가 없는 點等을 들 수 있겠다.
이와같은 結果를 關係機關 會議에
붙인 결과 貿易業者의 代表인 貿易
協會의 強力한 反對에 부딪쳐 다음
과 같은 條件下에서 받아 드릴것을
前提條件으로 한 것이다.

첫째, 倉庫設營主의 事前 付保要
請이 있을 경우에 限定하였으며,

둘째, 保險契約 成立時期에서도
搬入報告書를 火協에 提出한 것에
限하여 保險契約이 成立되도록 制
限을 두었으며,

셋째, 搬入搬出의 定義에서도 搬
入出 報告書를 提出한 때로 規定하
였으며,

넷째, 補償의 範圍는 倉庫設營
主가 火協에 搬入報告書를 提出한
것에 限하여 補償하도록 하는 等諸
般規定을 明文化하여 明確히 하였
다.

한편 指定保税區域中 關稅協會管

轄 各 稅關構內 倉庫의 境遇 別途
包括契約을 締結한 藏置場에 對하
여서는 藏置場의 概念에서 除外시
켰다.

이는 現在 全國 取扱件數의 約
40%가 同 構內倉庫의 貨物인 反面
舉收保險은 全體의 約 5%밖에 占
有하고 있지 않은 點과 同指定管
理人으로 指定된 關稅協會의 境遇에
取扱業務量 過多에 依하여 別途
包括契約을 締結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으며 Container 藏置場의 貨物
集荷所(Container Freight Station)
내에 搬入되는 貨物만을 付保對象
으로 할 수 있도록 藏置場의 概念을
明確히 하였으나. 이는 輸出貨物의
物動量의 增加에 따른 大量運送(Mass
transportation) Container에 依存함에
따라 Container藏置場의 一部인 貨物野積場(Container yard)
에 搬出入되는 貨物은 대
부분이 滿載(Full Container) 되어
船積하기 위하여 一時的으로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同場所에서 通
關節次를 取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다른 場所에서 通關節次가 끝난 貨
物로서 개봉되지 않는 狀態에서 付
保對象으로 하였을 경우에 貨物의
數量, 品名, 減價 等을 確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貨主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倉庫設營人이 保管料 역
시 받지 않은 點과 保險料를 徵收

할 수 없는 實情에 비추어 볼 때 付
保對象으로 하기에는 땊은 어려움이
存在하고 있다.

② 保稅貨物의 定義, 現行特約에
서는 特約書의 本文에 同貨物의 定
義를 두지 않고 別表의 特別料率
에 關한 規定에 定義 지어 있는 것
을 改正案에서는 本文에 新設, 即
特約 締結된 藏置場에 搬入된 物品

으로서 外國物品(輸入免許된 物品
포함) 출입하고자 하는 物品으로 規
定하여 用語의 統一을 期하였으며

③ 關係機關의 協助: 現行 特約
에서 1個月前에 書面通知로서 解止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改正한
特約의 解止 實効는 相對方의 한側
에서 事前에 期日을 定하여 書面通
知를 하므로 解止할 수 있으나 반
드시 事前에 關稅廳長에 通報하도록
規定하므로서 協約된 狀況을 誠
實히 履行하지 않아 發生되는 여러
가지 問題點을 關係機關의 指導내
지 行政措置로서 誘導할 수 있도록
한 點이며 또한 搬出·入 報告書를
火協이 定한 別途의 樣式을 使用하
게 함으로서 倉庫設營主들이 管轄
稅關에 提出하는 搬出·入 報告書作
成의 이중作業을 하므로서 이로 因
하여 發生하는 여러가지 問題點
即 付保累落 造作 및 業務量 過多
等을 考慮하여 改正案은 稅關報告
書寫本으로 代替할 수 있도록 하여
管轄稅關의 報告書와 언제던지
Cross check, 付保漏落 내지 造作
을 防止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料率 調整

現行 料率에서는 件當 最低 保險
料가 50 원에서 200 원으로 引上 調
整하는 한편 野積 및 헛간요율을 現
行 3級 要율의 20%을 削減加算하
여 新設하였다.

라. 運營制度의 改善: 過去의 倉
庫設營主가 搬入搬出 報告書를 火協
에 提出하는 制度, 即 消極의 業
務運營에서 各倉庫擔當者를 두어 每
日 倉庫를 巡回하여 同業務에 따른
諸般付保業務의 指導等을 通한 積極
의 業務로 轉換하는 한편 各倉
庫設營主들이 任意로 發行하고 있
는 領收證等을 統一하여 付保漏落

내지 造作을 事前에 check 하므로
서 倉庫 設營主들이 付保業務에 적
극적으로 參與토록 誘導하여야 한
다. 특히 이와같은 方法을 今年初
부터 서울 및 釜山地域에서 實施한
바에 依하면 擧收實積이 잘反映되
고 있다.

7. 結論

同 保險 制度가 70年부터 施行된
후에 그 동안의 우리나라 經濟與件
이 너무나 顯著하게 달라 了음에도
不拘하고 그 동안의 同制度의 運營

上에 發生되고 있는 問題點을 補完
改善하여 왔으나 76年度 釜山 大火
를 契機로하여 이번에 根本적으로
改善을 推進하게 된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앞으로 同改善案에 依하
여 業務를 隨行하는 過程에서 實務
上에 예기치 못한 問題點이 發生하
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그때그때에 補完되어야 할 것
이다. 한편 同制度改善도 重要하지
만 同制度의 運營이 더욱 重要하다

특히 同業務를 隨行함에 있어서
擔當者들의 資質向上 即 貿易實務
業務를 專門機關에 委託教育을 通

하여 倉庫設營主 内지 貨主를 Leader
할 수 있는 能力を 開發시켜야
하며 同 保險과 關聯된 海上, 運送
火災等 綜合的인 保險知識의 基盤
위에서 保稅保險制度의 特性에 알
맞게 適用할 수 있는 能력을 갖춘
擔當者들의 確保問題等 여러가지問
題가 아직도 常存하고 있으므로 이
를 為한 적극적인 劉발침이 先決되
어야 한다.

끝으로 同 保險制度 改善을 為하
여 參여하신 關係者들의 協助에 對
하여 深甚한 謝意를 드리는 바입니다.

년도별 수출입 대 부보 현황표(I)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별	합계(A)		부보금액 (B)	대비 (B/A)
	\$	₩		
1970	2,819.2	890,867.2	81,142	9.1%
1971	3,461.9	1,291,288.7	119,953	9.3
1972	4,146.1	1,650,147.8	193,351	11.7
1973	7,465.3	2,963,724.1	330,729	11.7
1974	11,312.2	5,475,104.8	435,985	8.0
1975	12,355.4	5,980,013.6	525,876	8.8
1976	16,488.8	7,997,068	946,405	11.8
1977. 6.	8,718.3	4,228,375.5	708,719	16.8
계	66,767.2	30,476,589.2	3,342,160	11.0

지역별 거수실적 대비표(III)

단위 : 천원

구분 지역별	76년도거수 (A)	77년도거수 (B)	대비(B-A) A
서울	67,164	100,457	49.57%
부산	149,905	245,793	63.97
대구	8,533	9,956	16.68
인천	34,186	44,052	28.86
계	259,787	400,258	54.07

* 주 : 1976년 9월 말 현재 거수실적 대 1977년도
동월 대비임.

지역별 참고 현황표(IV)

1977. 9. 30 현재

구분 지역별	창고 수	담당 인원
서울	13	9
부산	37	6
대구	3	1
인천	23	2
마산	1	—
계	77	18

〈完〉

년도별 거수보험료 대 지급보험금 대비표(II)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별	거수보험료 (A)	지급보험금 (B)	대비(B-A) (%)
1970	31	—	(%)
1971	84	—	
1972	101	—	
1973	138	—	
1974	211	—	
1975	236	—	
1976	364	3,257	894
1977. 9.	400	—	
계	1,565	3,257	208